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권영세·이인선·이상휘

주진우 · 구자근 · 강대식

주호영 · 조승환 · 유영하

인요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 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재 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이른바 "방재도로" 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.

그러나 2005년 태풍 매미, 2011년 우면산 산사태, 2016년 구미 불산 유출, 2017년 강릉 산불 등 과거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접근로가 확보 되지 않아 인명구출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다수 있고, 2023년 홍수 역시 방재도로체계의 부재로 피해가 확대된 바 있음.

이와 비교하여 일본·미국·캐나다 등에서는 지진·허리케인 등에 대비하여 방재도로를 지정·관리하고, 이를 재난계획에 반영하며 주민 에게 사전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운영이 이 루어지고 있음.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및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·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도록 하고, 방재도로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며,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및 보수·유지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는 등 방재도로 지정·운영의 근거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4호, 제30조제1항 및 제34조의10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"방재도로"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피 및 인력·장비·물자 수송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34조의10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.

제30조제1항 전단 중 "장은 대통령령으로"를 "장은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 및 제34조의10에 따른 방재도로 등 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제3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10(방재도로의 지정 및 운영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별·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에 방재도로를 활용하여야 한다.
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및 보수·유지관리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· 운영할 수 있다.
- ④ 방재도로의 지정·지정취소 및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| 제3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3. (생 략)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"방재도로"란 재난이 발생 <신 설>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신속한 대피 및 인 력・장비・물자 수송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34조의10 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말한 다. 제30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 제30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 전점검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 전점검 등) ① -----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(행정기 관만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-----장은 제27조에 따 같다)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른 특정관리대상지역 및 제34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 조의10에 따른 방재도로 등 대 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통령령으로-----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 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② ~ ⑤ (생 략) <신 설>

•	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4조의10(방재도로의 지정 및 운영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 역과의 인접성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별·재난 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여야한다. 이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- ②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 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에 방재도로를 활용하 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도로 의 지정현황 및 보수·유지관 리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

할 수 있도록 방재도로 정보시 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④ 방재도로의 지정·지정취소 및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의 구 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